

전문위원 검토보고

(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□ 제안 이유

○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,

○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□ 주요 내용

○ 수수료를 면제함(안 별표1)

(1) 중학교 배정수수료 : 1통 300원 삭제

(2) 교육비 납입 증명 : 1통 300원 삭제

○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(안 제5조제2항)

(1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

(2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·모부자복지법·장애인복지법·아동복지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

○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란을 일부 변경함(안 별표2)

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은 수수료징수 면제대상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

○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의 폐지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증빙서류로 사용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가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, 타 사설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 본 개정조례안 수수료 감면대상 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 또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들을 감면대상자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